

2011-2012
학생 안내서

학생의 권리와 의무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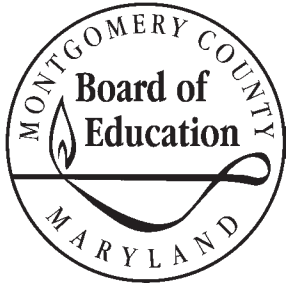


주 법률, Maryland State Board of Education 준칙, 그리고 Montgomery County Board of Education 정책과 행정 규정은 바뀔 수 있으며 이는 책자의 해당되는 내용과 참고 문헌을 대신하게 됩니다.

학생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비전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는 것은 모든 어린이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모든 어린이는 지구촌 시대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공헌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그리고 마음가짐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존중되고 격려받으며 기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교육 위원회(Board of Education)

Mr. Christopher S. Barclay
의장

Ms. Shirley Brandman
부의장

Ms. Laura Berthiaume

Dr. Judith R. Docca

Mr. Michael A. Durso

Mr. Philip Kauffman

Mrs. Patricia B. O'Neill

Mr. Alan Xie
학생의원

학교 행정

Dr. Joshua P. Starr
교육감

Mr. Larry A. Bowers
최고 운영 위원

Dr. Frieda K. Lacey
부교육감

850 Hungerford Drive
Rockville, Maryland 20850
www.montgomeryschoolsmd.org

.....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학생의 권리와 의무 안내서

장애우를 위한 본 안내서가 미국 장애인 복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의거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분은 Public Informaton Office 850 Hungerford Drive, Room 112, Rockville, MD 20850, 전화 번호 301-279-3391 또는 1-800-735-2258(Maryland Relay)로 연락해 주십시오.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d(MCPS)와 의사소통을 위해 수화 통역 및 기타 특수 보조 등의 제반 시설이 필요한 분은 청각 장애 프로그램(Deaf and Hard of Hearing Program)의 Interpreting Services(통역 서비스: 전화 301-517-553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MCPS는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혈통, 국적, 결혼 여부, 사회경제적 지위, 연령, 장애, 신체적 특징 또는 성적 경향에 의한 차별을 금합니다. 차별 또는 성차별과 성희롱 등의 Title IX에 관한 문의 및 민원은 Deputy Superintendent of Schools(전화번호: 301-279-3126, 1-800-735-2258/Maryland Relay)로 전화하시거나 다음 주소로 서면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850 Hungerford Drive, Room 129, Rockville, MD 20850)



© 2011년 8월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Rockville, Maryland



학생용 자료

MCPS 내 연락처

교육구 정보와 비상시 안내

- Twitter에서의 MCPS
- 퀵노트 이메일 메시지와 학부모통신: www.mcpsQuickNotes.org
- Ask MCPS 정보 서비스
 - 전화번호: 301-309-MCPS(6277)
 - 이메일 주소: AskMCPS@mcpsmd.org
- MCPS TV (www.mcpsITV.org; Comcast 채널 33번, 34번 RCN 채널88번, 89번, Verizon 채널 35번, 36번)
- 날씨에 따른 비상시 안내(녹음).....301-279-3673

Youth Crisis Hotline of Montgomery County301-738-9697
 Montgomery County Crisis Center (Montgomery County 위기관리 센터)301-738-9697

안전/보안 관련사항 보고

MCPS '안전한 학교' 24시간 핫라인301-517-5995
 MCPS Department of Safety and Security301-279-3066
 Montgomery County Police Department Family Crimes Division.....240-777-5400
 Montgomery County Police Nonemergency301-279-8000
 Montgomery County 경찰서 마약 상담 전화240-773-TIPS (8477)
 Montgomery County 폭력 조직 상담 전화240-773-TIPS (8477)
 Montgomery County 보건과 복지 서비스 안내 전화240-777-1245
 사이버 폭력.....1-800-843-8000

학교 내에서의 적절하지 못한 온라인 활동은 다음으로 신고하십시오. CyberSafety@mcpsmd.org

유용한 전화안내

학생회

- 학생 문제 조정관(Coordinator of Student Affairs)301-670-1419

교육위원회 학생위원

- 교육위원회 사무실(Board of Education Office).....301-279-3617

Community Superintendents

- Office of School Performance.....301-315-7377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Partnerships301-279-3100

MCPS 웹사이트 자료

- MCPS 웹사이트 학생페이지: www.montgomeryschoolsmd.org/parents/
- 진학/진로정보: www.montgomeryschoolsmd.org/curriculum/careercenter/
- 대학준비를 위한 7개의 열쇠(7 Keys to College Readiness): www.mcps7keys.org/
- 카운티 학생회 단체: 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studentaffairs/sga/
- 교과과목 안내(Course Bulletin): www.montgomeryschoolsmd.org/curriculum/coursebulletin/
- 졸업요건: www.montgomeryschoolsmd.org/curriculum/coursebulletin/publications/diplomaRequirements.html/coursebulletin/publications/diplomaRequirements.html.cfm
- 고등학교 평가시험(High School Assessment): www.montgomeryschoolsmd.org/curriculum/hsa/
- 성적평가/성적보고: www.montgomeryschoolsmd.org/info/grading/
- Policies and Regulations: 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policy
- 특별 프로그램: www.montgomeryschoolsmd.org/curriculum/specialprograms/
- 교육위원회 학생의원: www.montgomeryschoolsmd.org/boe/about/members/student.shtm
- 학생의 권리와 의무: www.montgomeryschoolsmd.org/students/rights/
- 학생봉사학습(Student Service Learning): www.mcpsssl.org
- 교육감 리더십 프로그램: 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superintendent/leadership/

목차

머리말	1
무상 공립 교육	1
학생의 참여	1
사생활 보호권	1
출결석	1
인정된 결석	2
무단결석	2
결석으로 인한 학업의 보충	2
우등, 높은 수준, AP 과목	2
성적평가/성적보고	2
학생봉사학습	3
학생회	3
참여	3
학교 당국의 지원	3
학생회의 권한	3
탐구와 표현의 자유	3
발표	3
청원	3
과학기술	3
출판 및 저작물 - 인쇄 및 비 인쇄 매체	4
학교후원출판/저작물 및 기타 매체	4
학교가 후원하지 않는 출판/저작물 및 기타 매체	4
금지된 유인물	4
정치적 유인물	4
선거 운동 참여와 정치적 유인물 배포	5
집회의 자유	5
국민의례	5
종교의 자유	5
클럽, 팀과 학생단체	5
학교후원단체	5
학교가 후원하지 않는 단체	5
차별 금지	6
복장 및 몸차림	6
성희롱	6
학생 기록부	6
수색과 압수	7
학교 안전 및 보안	7
휴대용 통신장비	8
훈육	8
10일 이하의 정학	8
10일 이상의 정학 및 제적	9
학교별 훈육방침	9
교육구와 각 학교에 적용되는 훈육정책 절차 지침	9
전체 카운티 규정 위반	10
재심 요청- 이의 제기 처리 - 적법한 절차	11
학교 차원의 결정	11
학교장의 결정에 대한 재심 요청	11
교육감의 결정에 대한 재심 요청	11
부록—MCPS 규정	13

머리말

이 책자는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에서 학생이 누리는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설명한 안내서입니다. 이 책자는 학생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법률과 규정의 요약일 뿐이며,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의 학생의 권리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한 것은 아닙니다. 추가 정보를 위하여 각 항목의 끝 부분에 참고 문헌으로 되어 있는 특정한 법, 정책과 규정을 잘 읽으십시오. MCPS 정책과 규정은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policy) 정책과 규정 안내책자 사본은 학교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학교행정 교직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 법률, Maryland State Board of Education 준칙, 그리고 Montgomery County Board of Education 정책과 행정 규정은 바뀔 수 있으며 이 책자에 포함된 진술 내용과 참고 문헌을 대신하게 됩니다.

무상 공립 교육

Montgomery County 거주자로 5세 이상 21세 이하인 모든 아동은 무상으로 적절한 공립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Montgomery County 내의 모든 아동은 출생 시부터 21세까지 무상으로 적절한 공립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학생의 참여

학생은 각 과목의 개괄적 목표와 평가하게 될 교습내용에 대해 통보받게 됩니다. 학생은 교실활동에 참여하고 교실의 규칙과 기대 및 절차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학생은 또한 교사와 상담하여 학기 중에 정규 학교 프로그램에 대하여 추가/대체 프로그램을 또는 학기 외에 학생들이 관심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세미나, 회의, 소규모 코스를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은 학교장과 교직원과 함께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은 교육위원회의 전략계획과 학교의 기본 교육 목표, 학생의 연령과 성숙도에 맞는지, 논란이 많은 주제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학생대표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교육위원회 주요정책을 개발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사무기관, 부서, 위원회(회의의 학생대표를 포함) 등 책임담당 기관들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또는 학생의 시정 요구사항 요청이 참작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학생은 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학교 규정과 규칙의 개정과 제발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학교 규정과 규칙의 개정과 제발 전에 이에 대한 사본이 학생들이 접하기 쉬운 장소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연람할 수 있도록 준비됩니다.

만약 학부모/후견인이 가족 주기, 인간의 성, 성병 예방과 산아 제한 등 주 정부가 요구하는 종합 보건 교육 교과과정 단원에 해당하는 수업 활동에 자녀인 여러분이 참여하지 않도록 요청하면, 대체 활동이 제공됩니다.

참고문헌:

Policy JFA: 학생의 권리와 의무

Regulation JFA-RA: 학생의 권리와 의무

COMAR 13A.04.18.04 종합 보건 교육 프로그램(Program in Comprehensive Health Education)

사생활 보호권

교직원은 학생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는 학생의 성적, 종교, 가치, 신체적 상태에 집중하게 되어 학생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활동이라 여겨질 경우, 교사에게 대체 활동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은 교실에서의 토론, 과제물 또는 다른 방법에 가족 간의 사건, 개인의 버릇, 관계, 취향이나 환경 설정, 특징, 결정, 문제 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비교하는 등의 개인적 정보를 드러내지 않고 교습 목적을 이룰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은 공고를 한 후 공공장소에서 오디오와 비디오 카메라 감시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 감시를 통하여 모은 증거에 근거하여 어떤 학생이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참고문헌:

Policy JFA: 학생의 권리와 의무

Regulation JFA-RA: 학생의 권리와 의무

출석석

출석은 학업성취에 중요한 요소이며 교재내용 습득과 과목 학점 취득을 위한 주요 요건입니다. 학생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며 학교와 수업에 늦지 않도록 출석해야 합니다.

학생은 학교가 인정하는 결석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기 중 모든 수업과 그 밖의 다른 요구되는 활동에 출석해야 합니다. 학생의 출석 상황은 성적표를 통하여 학부모/후견인에게 통보됩니다. 하루 4시간 이상을 출석했을 경우 출석으로 기록됩니다. 출석시간이 2시간 이내 4시간 미만의 경우는 1/2일 출석으로 기록됩니다.

해당 학교의 절차에 따라, 학생이 결석을 하게 되면, 학교는 학생의 결석에 대한 사유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인정된 결석

학생은 다음 경우에 한하여 결석을 인정받습니다.

- 직계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 본인이 아플 경우(교장은 장기화되거나 연장 질병에 의한 결석은 학부모/후견인에게 담당의사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소환에 응할 경우
- 종교적 휴일
- 주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 정확
- 기상 조건이 열악한 경우(즉, 학생의 등하교가 어려울 정도로 악천후인 경우)
- 공인된 수송 수단이 결여된 경우(예를 들어, 학교 버스가 오지 않은 경우)
- 학교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학생이 이러한 이유로 결석을 한 경우, 복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부모/후견인이 작성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수요일과 목요일에 결석을 했고 금요일에 출석했다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결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결석은 무단결석으로 간주됩니다. 학생이 18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경우라면, 본인이 사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합법적 나이가 되었으나 부모나 후견인이 자녀와 함께 살고 있을 경우, 추가의 무단결석 통지가 학부모/후견인에게 보내질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후견인 또는 학생 본인 (성년일 경우)이 학교 수업일 5일 이전에 허락을 요청한 경우, 학교장은 연구 과제/다른 활동을 위한 결석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유에 해당되면, 그 결석은 인정됩니다.

- 대학 캠퍼스 방문
- 대학 입학 소개 프로그램 참가
- 취직을 위한 면접
- 승인된 협업 교육 프로그램 참가
- 단기 혹은 장기 연구 과제 참가

가족동반여행은 인정된 결석이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학교장은 그 결석 상황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무단결석

위 조건에 따라 인정받지 못한 결석이 무단결석입니다. 하루를 결석했고 인정받지 못했다면, 결석한 날의 모든 수업에 무단결석이 됩니다. 무단결석은 규칙위반으로 간주되며 각 학교의 징계위원회가 정한 학업 외 훈계에 따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가된 결석 여부에 상관없이 수업에 빠진 경우 해당 수업에서 제공된 과제물을 이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사는 무단결석에 의해 제출하지 못한 과제나 보지 못한 시험에 대해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학생이 무단결석한 날에 과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규칙적인 출석을 장려하고 출석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중재하는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결석으로 인한 학업의 보충

인가된 결석 여부에 상관없이 수업에 빠진 경우 해당 수업에서 제공된 과제물을 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석이 인정되거나 정학의 결과라면, 해당 교사는 학생이 학업을 보충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무단결석의 경우, 해당 교사는 학업의 보충을 도와주거나, 재시험, 과제 제출기간 연장 등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비록 교사는 학생이 결석 기간의 학습한 내용에 대한 보충을 도와줄 의무가 없으나, 학생은 여전히 학업을 보충하여 해당 과목의 나머지를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참고문헌:

- Policy JFA: 학생의 권리와 의무
- Regulation IKA-RA: 성적평가/성적보고
- Regulation IOA-RA: 영재교육
- Regulation IQB-RA: Extracurricular Activities (과외 활동)
- Regulation JEA-RA: Student Attendance (학생의 출석)
- Regulation JFA-RA: 학생의 권리와 의무
- Maryland Student Records System Manual/메릴랜드 학생성적평가설명서
- High School Course Bulletin/고등학교 과목계시판

우등, 높은 수준, AP 과목

학교장은 우등, AP, 수준 높은 과목에의 도전할 재능과 동기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학생의 수업수강 기회를 보장합니다. 각 학교는 어려운 프로그램이나 높은 수준의 과목을 수강할 능력과 동기가 있는 모든 학생에게 우등, AP, 수준 높은 과목 등록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생의 실력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은 다음의 다양한 기준을 통해 검토됩니다.

- 필수 과목의 습득(학점: A, B, C)
- 학부모/후견인 추천서
- 적절한 경우 표준평가시험성적
- 어려운 과제를 완성하고자 하는 의지
- 학생의 관심과 동기
- 교사/카운슬러의 추천서
- 학생의 작품과 포트폴리오

성적평가/성적보고

성적평가와 성적보고(성적표)는 공정하고 각별하게 실행되며 모든 학생이 엄격한 학업성취수준에 이르도록 지원합니다. 성적은 학교시스템 내에서 일관성 있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교과 과정에 요약된 대로 그 평가는 학년 수준과 과목 기대치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Policy IKA를 보십시오: Grading and Reporting (성적 평가와 성적 보고), 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policy

1-5학년에서의 성적평가는 학년수준의 기대치와 관련된 학과목 성취를 반영하여 이루어집니다.

6-12학년에서의 성적평가는 과목의 기대치와 관련된 학과목 성취를 반영하여 이루어집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교사는 성적평가, 재교육/재평가 그리고 숙제 등의 MCPS에서 규정한 절차를 시행합니다. 교사가 책정한 제출 예정일(due date)을 지나 제출되는 과제물은 등급 한 단계 혹은 그 등급의 10%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최종마감일(deadline)을 지나서 제출되는 과제물은 0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교사는 시험 또는 과제의 50% 이상을 성적 채점용으로 배당합니다. 교사는 학생시험/과제의 기본 요구요건에 미치지 못했다고 여겨질 경우는 0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추가 점수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학부모/후견인과 학생은 이러한 절차에 관한 정보를 MCPS 웹사이트 www.montgomeryschoolsmd.org/info/grading 그리고 각 학교 행정사무실에 서 얻을 수 있습니다.

Student Service Learning (SSL: 학생 봉사 학습)

Maryland State의 Department of Education 졸업장을 받고자 하는 모든 학생은 졸업 요건인 등록, 학점, 과목, 그리고 기초 능력 이외에도 봉사 학습 시간을 마쳐야 합니다. 봉사 학습 시간은 5학년을 마친 여름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봉사한 시간은 누적됩니다. 학생은 졸업하기 전에 SSL로 75시간을 취득해야 합니다. MCPS SSL(학생봉사학습)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웹 사이트 <http://www.mcpsssl.org>에서 검색하시거나 중고등학교 SSL(봉사학습)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참고 문헌:

Annotated Code of Maryland, Education, Sections 13A.03.02.07

학생회

참여

학생은 학생회를 구성하며 학생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학생회를 통해 학교에 대해 의견을 낼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은 학생들을 책임질 수 있는 효과적인 학생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에 합법적으로 등록하고 학업 면에서 자격과 학교 회칙상의 기준을 갖춘 학생이면 누구나 학생회 임원으로 출마하여 그 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임원직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업 면에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해당 학생이 학생회 임원으로 계속 활동하기 위해서는 성적이 최소한 2.0을 유지해야만 하고 성적표 상에 낙제 등급이 하나 이하여야 합니다. 학생회 활동으로 봉사학습시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교 당국의 지원

교직원은 학생의 학생회 참여의 권리를 지원할 것입니다. 학교장은 학생회가 학교 경영에 학생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매년 봄 학생회 운영 위원회는 학교장에게 지도교사를 추천하며, 학교장은 학생회 지도 교사를 임명합니다.

교직원은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학교의 허락을 받고 학생회 활동으로 수업을 빠지게 될 경우는 학생의 결석을 허락된 결석으로 인정합니다. 빠진 수업과 과제물 이수는 학생의 책임입니다.

학생회의 권한

학생회의 학생은 필요한 경우, 교직원과 담당교사의 도움을 받아, 기존의 회칙에 새 회칙이나 개정안을 준비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회칙은 학교장의 결정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학생은 회칙이 법과 정책 또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학교장의 판단에 효과적인 학교행정을 심각하게 방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학교장이 회칙이나 개정된 회칙을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승인이 안 되었을 경우, 서면으로 사유를 적은 통보를

받게 되며 회칙에서 학교장이 명시하는 부분을 수정할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학생회를 통해 학생은 학생회가 제안한 내용에 대한 학교의 답변을 5 수업일 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회의 개정이나 회칙이 채택되지 않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학생회에 5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답변을 합니다. 만약 내용이 광범위하거나 복잡할 경우, 학교는 학생회 대표와 상의하여 서면 또는 구두 설명의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학생회 운영 위원회, 학생회 지도교사, 학교장은 정기적으로 학생회 조직의 과정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참고 문헌:

Policy JFA: 학생의 권리와 의무

Regulation JFA-RA: 학생의 권리와 의무

Regulation IQD-RA: Academic 과외 활동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성적자격요건

Regulation IQD-RB: 과외 활동에 참여하는 중학생의 성적자격요건

탐구와 표현의 자유

발표

학생은 논쟁이 되는 주제의 다양한 관점을 주와 카운티 교과 자료의 한계 내에서 발표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의 시각을 표현하여 자신의 의견에 대한 대체 아이디어와 형태에 귀중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존중할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시각을 각자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은 수업에서 명시되는 주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며 교실 내의 토론에 참여하여 토론주제에 대한 시각을 넓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은 저속한 언어나 욕을 사용하여 긍정적 학습환경과 서로를 존중하는 환경을 유지하자는 목표를 훼손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청원

학생은 학교와 만나서 잘못된 이해를 정정하고 청원대상인 주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회의를 주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은 학교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한 교습시간 외에 청원서를 돌릴 권리가 있습니다. 청원서의 내용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거나 비방 또는 외설적인 내용, 학교행정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생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청원서를 못 돌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응답내용을 게재하거나 확인될 경우 내용을 작성자에게 알릴 권리가 있습니다.

과학기술

학생은 Regulation IGT-RA에 명시된 대로 MCPS가 제공하는 기재를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장비, 컴퓨터 서비스, 그리고 학교와 사무실에서의 통신망 접속은 MCPS의 교육목표에 맞는 목적을 위하여 제공됩니다. 모든 실행 내용은 MCPS의 점검을 받고 기록 및 보관될 수 있습니다. 학생은 도난, 악의적 훼손, 권한 밖의 접속, 변경, 그리고 상실에 대해서 정보와 자원을 보호해야 하며 관련 주, 지방, 그리고 연방 정부 법을 따라야 합니다. 도난, 악의적 훼손, 권한 밖의 접속, 변경, 그리고 분실에 대해서 정보와 자원을 보호해야 하며 관련 주/지방/연방 정부 법을 따라야 합니다. 학교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 학생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기대할 수 없으며 기대할 권리도 없습니다. 학생은 전자기기에 관한 MCPS Regulation IGT-RA의 규정과 규칙에 따른 의무가 있습니다.

출판/저작물 - 인쇄 및 비 인쇄 매체

개인이나 단체가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제작하는 출판/저작물은 개인/단체의 후원을 받는 것입니다.

학교가 후원하거나 학교가 후원하지 않는 출판/저작물에 관해 각각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 유선 방송 요청은 MCPS 규정 IID-RA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후원하는 출판물과 저작물

신문, 기념 앨범, 문예지 같은 학교후원출판물 그리고 교내 연극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은 학교 후원 저작활동을 권장합니다. 각 출판/저작물을 위하여 자격을 소유한 담당 지도자가 배치됩니다. 학생은 담당교사의 허가 아래 학교가 후원하는 출판물과 발행물을 정하고 발전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담당교사가 출판 및 발행할 내용에 관해 허락하지 않을 경우 학생은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후원하는 출판/저작물 내의 광고는 다음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 대중적인 인물(유명 인사 혹은 정부 공직에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의 이름이나 사진을 포함하는 광고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 상표를 포함한 광고 역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광고가 뉴스 기사 혹은 다른 출판물의 일부 내용과 혼동될 경우, '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합니다.
- 광고는 후원하는 사람 혹은 회사의 실명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가능한 한, 광고 내용이 편집자, 학교 혹은 Board of Education의 견해나 정책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먼저 명기해야 합니다.

학교가 후원하는 출판물과 발행물에 관해서는 Regulation JFA-RA, 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를 보십시오.

학교가 후원하지 않는 포스터, 안내서 및 기타 발행물

MCPS 학생으로서 학생은 학교의 후원 없이 출판/저작물을 제작하고 배포할 권리가 있습니다. 배포한 출판 또는 저작물을 주거나 판매하거나 읽고 볼 수 있도록 전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학생은 게시판, 벽, 학생정보를 게시하기 위한 장소 등에 다음에 명시하는 금지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유인물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잡지꽃이의 책상 또는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학기 중 언제나 다음 금지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안내서나 팸플릿을 놓을 수 있습니다.

올려놓은 안내서나 팸플릿은 학교가 정기적으로 치우게 됩니다. 만약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을 담은 안내서/팸플릿으로 게시물이 제거되었을 경우는 서면으로 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직접 작성하지 않은 안내서/팸플릿을 붙이거나 배부할 경우 후원 기관이나 개인의 이름을 기재해야 하며 다음 문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Montgomery County 교육위원회, 카운티 교육감과 학교의 후원 및 지지를 받은 활동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정보제공자료는 집으로 가지고 가는 홀더나 책가방을 통해 연 4회 학교가 정한 시기에 학생에게 직접 제공되어야 합니다. MCPS Regulation CNA-RA 참조)

금지된 유인물

학교장은 다음의 경우에 유인물의 배포를 금지합니다.

- 내용이 법, Maryland 주 교육위원회 준칙, 그리고 MCPS 규정을 위반할 경우.
- 내용이 학교 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Substantial disruption)하거나 그럴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내용을 담았을 경우. "Substantial disruption"이란 폭동, 등교 및 수업 거부, 연좌농성, 건물파괴, 퇴실을 포함한 다수의 학생에 의한 학교행정방해, 무질서한 행동 등을 의미합니다.
- 일부 또는 전체 내용이 알코올 및 마약 불법사용 및 남용, 폭력, 십 대 성관계, 불법적인 인종차별 및 불법행위 등의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을 담거나 표현하고 있을 경우. 그러나 이는 책임 있는 디베이트 및 토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출판물이나 정보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 내용이 외설적이거나 성적 접촉을 설명하거나 표현하거나 Regulation JFA-RA에서 말하는 외설에 관한 세 가지 항목에 해당될 경우.
- 인쇄, 서면, 사인 및 그림 등을 통해 불이익, 거짓 또는 악의적인 유인물을 인쇄하거나 쓰거나 또는 사인 또는 그림 등을 통해서 개인을 공중 앞에서 멸시, 증오, 조롱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자세한 설명은 Regulation JFA-RA에 있습니다.

학교장은 학생의 출판물 배포를 금지할 때, 학생과 만나 출판물과 그것의 배포 허락 여부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학교장은 결정사항에 대한 사유서를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전달할 것입니다. 학생은 그 결정에 대하여 재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심요청절차는 '재심 요청-이의제기 절차-적법한 절차' (11쪽)에 있습니다.

정치적 유인물

주선거법을 위반하는 정치적 유인물 및 학교장에 의해 교육환경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치적 유인물을 배포할 수 없습니다. 선거 운동 자료에는 허가 받은 문장이 삽입되어야 합니다. (MCPS Regulation KEA-RA 참조) 이러한 결정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요청절차는 '재심 요청-이의제기 절차-적법절차'(11쪽)에 있습니다.

다른 정치적 유인물은 다음의 규정을 따라서 배포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사람에게 배포되기보다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인물.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배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만 직접 배부, 전시 또는 게시판에 게재.
- 학생은 도로변, 학교 식당, 지정된 복도, 학생회 교실/학생회관 등에서 배포할 수 있습니다. 교실과 도서관 또는 다른 용도의 교실에서의 배포를 금합니다. 다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 a. 교실이 자원 봉사자 모임 장소로 사용될 경우.
 - b. 유인물이 정규 수업 중에 교재의 일부로서 사용될 경우나 학생에 의해 자발적으로 토론회나 세미나가 이루어질 경우.
- 정치적 유인물은 수업 시간 이전/이후에만 배포하십시오.

정치 운동 참여와 정치적 유인물 배포

9-12학년 학생은 부모의 동의와 교장 또는 교장 대리인의 동의 그리고 후보나 당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규 학교 시간 내의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허락 기간은 예비 선거와 일반 선거 기간인 2주 동안 총 출석일의 3일까지입니다. 정치적 캠페인을 통해 학생 봉사활동 시간을 얻고 싶을 경우, 학생은 각 후보자마다 MCPS 약식 560-50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문헌:

- Policy JFA: 학생의 권리와 의무
- Regulation JFA-RA: 학생의 권리와 의무
- Regulation KBA-RB: Educational Purposes and Administration of MCPS Web (MCPS 웹의 교육적 목적 및 관리)
- Regulation KEA-RA: 정치 운동의 참여와 정치적 유인물 배포
- Regulation IGT-RA: 컴퓨터 시스템과 통신망 보안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
- Regulation KBA-RB: MCPS 교육 방송에 관한 유선 방송 프로그램

집회의 자유

학생은 자신들에게 중요하다 생각되는 문제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모이고 평화롭게 시위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은 학교장과 이런 모임을 학기 중, 외, 점심시간에 모일 수 있는지 또한 어떤 형태의 감독이 필요한지에 대해 사전에 상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생은 이 집회가 질서 정연한 것이 되도록 교직원과 협력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참고문헌:

- Regulation JFA-RA: 학생의 권리와 의무

국민의례

학생은 학교에서 국민의례에 참여할 기회가 있습니다.

학생은 애국심을 표현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으며 이를 안 함으로 처벌을 받거나 창피를 당하지 않습니다.

학생은 국민의례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문헌:

- Annotated Code of Maryland, Education, Section 7-105
- Regulation JFA-RA: 학생의 권리와 의무

종교의 자유

학생은 종교에 중립적인 학교가 후원하는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은 과목이나 졸업식이나 조회 등 학교가 후원하는 행사에서 종교적 신념을 반영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가 후원하지 않는 학생 기도 모임 같은 종교적 의례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학교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한 학교에서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은 MCPS 가이드 라인에 따른 종교 음악 등의 축제 콘서트에 참석하거나 개최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선택과목으로 종교를 다루는 역사 또는 비교 종교를 선택 과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실에서의 프리젠테이션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특정 종교적 신념을 대변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인 유인물의 배포는 정치적 유인물에서와 동일한 지침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참고문헌:

- Regulation JFA-RA: 학생의 권리와 의무
- Regulation IKB-RA: Homework Procedures (숙제 절차)

클럽, 팀과 학생 단체

학생은 교내 클럽, 팀, 그리고 다른 학생단체를 구성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참석에 영향을 주는 교육위원회의 정책과 MCPS 학교의 규정을 숙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가 후원하는 활동에 대한 과외 활동비는 학생이 부담합니다.

MCPS는 MCPS 및 Maryland Public Secondary School Athletic Association (MPSSAA)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에게 학교대항 운동경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스포츠 올림픽과의 파트너십을 요구하며 봄가을, 겨울, 봄에 운영되는 모든 운동계 팀을 포함합니다.

학교후원단체

일부 학교가 후원하는 단체에 참여하기 위하여 학생은 성적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선거 선출, 임명을 원하는 학생, 또는 각 클럽, 팀 또는 학생 위원회의 지도자는 학교 내외에 인격/도덕적으로 올바른 본이 되며 모든 정책과 규칙 그리고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학교장은 규율과 규칙을 어겼을 경우 과외활동의 참여를 제한할 권한이 있습니다. 승인된 학생단체는 학교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게시판, 방송시설(PA), 그리고 복사기 등의 적절한 사용을 포함합니다.

학교가 후원하지 않는 단체

학생은 교습 시간 외의 시간에 회의를 개최할 권리가 있으며, 다음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 모임이 안전과 보안의 위협을 갖지 않은 경우.
- 모임이 자발적으로 학생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 학교가 후원하는 클럽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
- 교직원이 회의를 후원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경우. 안전을 위해 교직원이 감독할 경우도 있습니다.
- 종교적인 회합을 포함하여 교직원이 모임을 지도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경우.
- 회의가 학교 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하거나 방해가 발생/예상되는 경우.
- 학교 외부 인사가 모임을 지도하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경우
- 모임에 공공 자금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 (모임의 장소를 제공하는 비용은 제외)

참고문헌:

- Policy IOB: 장애 학생 교육
- Policy JFA: 학생의 권리와 의무
- Regulation JFA-RA: 학생의 권리와 의무
- Regulation IQD-RA: Academic Eligibility for High School (과외 활동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학업 상의 자격)
- Regulation IQD-RB: 과외 활동에 참여하는 중학생의 학업 상의 자격.

차별 금지

모든 학생은 상호 간의 존경심을 갖추어 처신해야 하며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증오/폭력과 차별에 대한 법률은 용납되지 않으며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사회 경제적 지위, 성적 경향, 신체적 특징 또는 장애에 의한 차별을 금합니다.

학생은 왕따, 희롱, 협박이 없는 환경에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는 학습을 위한 안전한 장소이어야 합니다. 왕따, 희롱, 협박은 언어 행위, 신체적 행위, 서면으로의 행위(텍스트/문자 메시지 등의 전자기기 사용 포함)를 말합니다.

- 각 학교는 MCPS 230-35, 희롱 및 협박 행위/왕따 양식 (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 Reporting Form)의 필요 여부를 포함한 학생 행동에 대한 보고절차를 학교에 통보합니다. 신고서는 학교장에게 제출됩니다.
- MCPS는 약자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행위의 보고를 전폭적으로 장려하고 지지합니다.
- 학교장이나 대리인은 괴롭히기/왕따, 희롱, 협박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방법과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합니다.
- 학교장이 괴롭히기/왕따 사건에 관련된 학생의 학부모에게 즉시 연락합니다.
- 괴롭히기/왕따, 희롱, 협박이 계속될 경우 괴롭히기/왕따를 당하거나 제공한 학생 양쪽과 별도로 또한 비밀을 유지한 회의록을 통해 조사하여 결과가 나오도록 합니다.
- 괴롭히기/왕따를 당한 학생과 제공한 학생 그리고 방관한 학생들을 위한 도움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Board of Education Policy JHF, 약자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 행위를 보십시오.)

참고 문헌:

- Policy ACA: 대인 관계
- Policy JFA: 학생의 권리와 의무
- Regulation JFA-RA: 학생의 권리와 의무
- Regulation CNA-RA: 광고물과 발표물
- First Amendment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미 연방 헌법 제1차 수정안)
- Section 1983 of the Civil Rights Act of 1871 (1871년 시민 권리법 1983 조항)
- Title VI: Civil Rights Act of 1964 (1964년 시민 권리법)
- Title IX: Education Amendments of 1972 (1972년 교육 수정안)
-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1973년 재활법 504조항)
-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1990년 장애인 보호법)
- Policy ACB: 차별 금지법 (Nondiscrimination)
- MCPS Document R.E.S.P.E.C.T. Make it Real MCPS 책자 'R.E.S.P.E.C.T. Make it Real')

복장 및 몸차림

교직원은 학교의 훈육 규정에 열거된 복장과 몸차림에 대한 지역 사회의 기준에 따라 학생에게 학교생활에 적절한 복장과 몸차림에 관하여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다음의 열거한 경우가 아니면 복장 및 몸차림에 대하여 훈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학교 활동을 방해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 학교 활동을 실제로 방해하는 경우
-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 교과 수업이나 활동의 합당한 요구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폭력 조짐이 연상되는 경우
- 외설, 저속, 음란하며, 노출이 심하고, 성적인 자극이 우려되는 경우
- 담배, 술, 마약의 사용을 조장하는 경우

참고 문헌:

- Policy JFA: 학생의 권리와 의무
- Regulation JFA-RA: 학생의 권리와 의무

성희롱

성희롱은 상대가 싫어하는 성적인 접근, 성관계 요구, 그리고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적절한 성적인 말과 글 또는 신체적인 행위라고 MCPS Policy ACF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 고용/수업/학교활동 등에 참여 시 직/간접적으로 행해진 행위에 굴복했을 경우.
- 굴복/거부한 것이 가해자에 의해서 성희롱 피해자 개인에게 인사/학업 상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 개인의 업무/학업에 방해하거나 협박 또는 적대감을 표함으로써 부당하게 업무/학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한 학생의 성희롱은 부적절한 것이며 MCPS 정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교직원이 학생에게 가하는 성희롱은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장의 성희롱에 대한 신고는 Mrs. Carole Goodman, Associate Superintendent,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45 West Gude Drive, Rockville, Maryland 20850에게 신고하십시오. (전화: 301-279-3270)

참고 문헌:

- Policy ACF: 성희롱
- Regulation ACF-RA: Sexual Harassment (성희롱)
- Regulation JFA-RA: 학생의 권리와 의무

.....

학생 기록부

학교장은 학생의 학생 기록을 보존합니다. 누적기록부는 MCPS 양식에 학생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담은 기록부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비공개 기록부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 교직원은 학생 부모님/후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학생과 부모님/후견인 모두 회의를 할 때에 담당 직원과 함께 학생의 누적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원할 경우, 담당 직원은 학생에게 누적기록 사항을 설명해줄 것입니다.

학년 초 30일 이내에, MCPS는 학생 개인 정보에 기록될 정보의 범주에 관하여 공고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학생의 성명, 전화번호, 출생일 및 출생지, 그리고 다른 정보를 포함할 것입니다. 학생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학부모, 교사, 학생, 이전 학생/군부대에만 보내질 수 있습니다. 학생 부모님/후견인은 이러한 정보의 일부/전부를 개인신상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의 학생 기록부상의 다른 정보와 똑같이 비밀리에 처리됩니다.

학생이 성년이 되었다면, 학생이 학생 기록에 관하여 부모님/후견인과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학생이 피부양자라면, 학생의 나이에 상관없이 부모님/후견인은 학생의 학생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Policy JFA: 학생의 권리와 의무

Regulation JFA-RA: 학생의 권리와 의무

Regulation JOA-RA: Student Records (학생 기록)

.....

수색과 압수

학교장, 교감, 안전 요원, 학교가 후원하는 여행에서 지명된 교사는 학생이 어떤 물품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소지하는 것이 형법상 위반이거나 주정부 법/MCPS 법과 규정에 위반이라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교내에서 또는 학교가 후원하는 여행 중에 학생에 대해 타당한 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신체, 소지품, 사물함, 할당된 개인 공간을 수색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은 수색하기 전에 학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알립니다.

위법적인 물품을 압수하는 모든 경우에는 경찰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러한 물품은 법 시행 요원/경찰에게 인도됩니다. 모든 다른 물품은 타당한 기간 내에 학생 또는 부모님/후견인에게 반환됩니다.

참고 문헌:

Policy JFA: 학생의 권리와 의무

Regulation JFA-RA: 학생의 권리와 의무

Regulation JGB-RA: 수색과 압수

Annotated Code of Maryland, Education, Section 7-308

.....

학교 안전 및 보안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은 긍정적 학습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의 안전과 보안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비상사태/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리고 학교 안전에 대한 사전 대비책으로서, 학교 비상사태/위기 계획을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기상황은 폭탄위협, 범법행위, 사고, 화재, 위험 물질 사고, 그리고 날씨와 관련한 사고 등을 포함한 즉시 대처해야 할 예측지 못한 돌발 상황을 의미합니다. 학교에서의 비상사태 대처 방법인 Lockdown, Evacuate, Shelter(LES)가 새로 개발되었습니다. 학생,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후견인 모두가 이 LES 비상사태 조치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락다운(차단 상태)은 MCPS 건물에서의 비상상태를 말합니다. '락다운'은 학교 건물 내부와 외부의 급박한 위험을 교직원에게 알리기 위해 사용되는 신호로 모든 활동이 즉시 정지상태로 돌입합니다. 모든 학생은 교직원의 직접적인 보호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학생과 교직원은 교직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조용히 대기해야 합니다. 이바규에이트(철수)는 학교 내의 비상상황을 알리기 위해 사용되는 신호입니다.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화재 피난경보나 학교행정의 피난 안내에 따라 건물에서 철수해야 합니다. 셸터(대피)는 비상사태/위기상황이 MCPS 시설 내에서 또는 인근에서 발생했음을 직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사용되는 신호입니다. 학생의 수를 파악후 교직원의 보호 하에 건물 내로 대피해야 합니다. 셸터(대피)의 세 가지 경우는 공공 안전의 위협, 심각한 날씨, 외부의 위험한 물질 살포입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후견인이 안전과 보안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를 할 수 있는 학교 안전 비상 전화(SAFE SCHOOLS HOTLIN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전 비상 전화는 하루 24시간/주 7일 직원이 비상근무하며, 발신자 확인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학교와 시설의 안전과 보안은 모두의 중요 관심사입니다. 안전과 보안에 관한 제보는 책임을 맡은 성인에게나 School SAFE SCHOOLS HOTLINE로 전화해야 합니다.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SAFE SCHOOLS
24-HOUR HOTLINE: 301-517-5995

하루 24시간/ 주 7일 근무하는 추가 비상전화

Montgomery County 경찰서-

비상이 아닌 경우: 301-279-8000

Drug Tip Hotline (마약 상담 전화): 240-773-3784

Gang Tip Hotline(폭력조직 상담 전화): 240-773-4264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Department of School Safety and Security (학교 안전 및 보안): 301-279-3066

Department of School (보건과 복지 서비스 안내 전화): Montgomery County Health & Human Services Information Line(정보 전화) (Monday-Friday, 8:30 a.m.-5:00 p.m.): 240-777-1245

참고 문헌:

Regulation EKA-RA: Emergency and Disaster Preparedness

(비상사태 및 재난 대비)

Regulation EKC-RA: Bomb Threats/Explosive Devices(폭탄 위협/폭발물)

Regulation JFA-RA: 학생의 권리와 의무

휴대용 통신 장비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은 MCPS 건물에서 그리고 MCPS가 후원하는 행사에서 휴대용 통신 장비를 소지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은 허락되지 않은 시간에는 장비를 끄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초등학생은 수업일 중에는 MCPS 학교 캠퍼스에서 휴대용 통신 장비를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학부모/후견인의 서면요청과 학교장/대리인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 초등학생은 수업일 중에 학교에서 휴대용 통신장비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대리인은 등하교 시의 안전, 학교 밖에서의 사용, 방과 후 활동, 의학적 배려 등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규정에 따라 허락합니다. 다른 요인들은 학교장/대리인의 재량에 따라 고려될 수 있습니다. 모든 소지 허가를 요청할 경우에 학부모/후견인, 학생 그리고 학교장/대리인 사이에 반드시 상호 연락이 있어야만 합니다.

학생은 언제라도 모독적이고, 상스러우며, 음란하게 휴대용 통신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한 예는 사진과 문자전송에도 또한 적용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토요 주말학교와 고등학교 플러스 프로그램에 다니는 학생의 수업 시간 중에도 적용됩니다.

참고 문헌:

Regulation COG-RA : 휴대용 통신장비

..... 훈육

학생은 서로를 존중하고 또한, 교직원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은 교칙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은 수업 방해, 질서 문란 행위, 타인의 권리 침해 행위, 위험한 행위 또는 교칙이나 훈육 규정 위반 행위의 결과로서 훈육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훈육은 공정하고 적절할 것이며 학생을 난처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폭탄 위협,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대한 살해 위협, 심각한 신체적인 공격/상해, 화기 소지, 화재경보기 허위 작동과 같은 일부 행위는 훈육 조치 및 범법 제재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학생이 받는 훈육 조치는 학생의 위반 사항과 관계될 것입니다. 훈육조치의 일환으로 학업 과제를 하게 될 경우, 이 과제는 학생이 받고 있는 수업내용과 관계될 것입니다. 받게 될 훈육조치는 단순히 처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즉 학생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수학내용을 교사가 훈육조치로서 많은 양의 수학문제를 풀도록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단순히 반복하는 일을 처벌로서 부과할 수도 없습니다. 문장을 반복해서 쓰게 하거나 사전을 베끼도록 할 수도 없습니다. 학생이 받을 수 있는 학업 과제물의 한 예로는 학생의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글을 쓰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MCPS 운동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학교 구역 내와 학교가 승인한 행사에서 술, 담배, 불법 마약, 규제 약물을 사용하거나 소지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모든 스포츠 활동으로부터 최소 연속 10일간 정학을 받게 되며 정학을 마친 후에야 스포츠 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High School Athletic Handbook-MCPS 고등학교 스포츠 안내서)

학생은 신체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 담당 직원이 교내에서 또는 학교가 후원하는 여행 중에 싸움을 말리거나, 폭력을 억제하거나, 난폭한 학생을 제지하고자 적절한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훈육조치가 성적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학생으로 말미암아 학생 전체가 훈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더라도, 교사는 학급 전원을 방과 후 남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을 한 학생을 알 수 없는 경우이라도 이 규칙은 적용됩니다.

학생이 진행하는 학교 외 또는 학교 밖의 행사와 학교가 후원하는 행사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위반된다고 학교장이 생각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버스나 버스 정거장 등을 포함하여 정규 학교 시간 외에 학교 활동과 관련된 위반 행위는 훈육을 받게 됩니다. 학교 밖에서 학교와 관련된 행위 (예를 들면, 귀가 중에 교사를 희롱하거나 다른 학생과 싸우는 경우)를 하면, 학교 당국은 이 문제에 관하여 학부모/후견인과 논의하고 다른 적절한 훈육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행동이 심각하게 수업 진행을 방해할 경우, 학생은 규정, Regulation JGA-RA: 학급 운영과 학생 행동 중재 (Classroom Management and Student Behavior Interventions)에 따라 잠정적으로 퇴실 조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훈육 조치로 말미암은 결석은 인정된 결석입니다. 교직원은 학생이 시험이나 다른 학업을 보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10일 이하의 정학

학교장은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생에게 10일 이하의 정학 조치를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 밖 정학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행정에 방해가 된다고 학교장이 판단할 경우에만 주어집니다. 출석일 문제 (예: 무단결석, class cutting, 지각)에 따른 정학은 학교 밖 정학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정학조치기간 동안 학생은 그 기간 동안의 수업이나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장의 허락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은 모든 경우에 운동장에서의 활동이나 학교활동을 금합니다. 학교 내 정학은 일정한 수업/교습시간 동안 학생을 다른 교실에서 학습지도 없이 근신하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학생의 정학처분 전 (학교 내/외 정학) 비공식 회의를 갖게 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설명됩니다.

- 정학 사유
- 학생에게 부과되는 조치에 대한 구두 혹은 서면 통보
- 학생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한 설명
- 학생 자신이 변론할 기회

만약 학생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기물을 파괴했을 경우 또는 수업이나 학교 활동을 계속 방해할 경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치가 필요하게 될 경우, 학생은 즉시 퇴교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비공식 징계 회의가 있을 것입니다.

학생이 정학 조치를 받게 될 경우 학교장은 학부모/후견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통보 내용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합니다.

- 학생의 정학 기간과 정학 조치 시작 및 종료일
-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학부모/후견인과의 징계 회의제의
-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안내 (교장, Student Services Appeals Unit, 교육감, 교육위원회)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는 추가적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0일 이상의 정학 및 제적

학교장은 학생에게 10일 이상의 정학 또는 제적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학교장이 퇴학을 권할 경우, 퇴학권고요청이 Disciplinary Review and School Assignment Unit에 보내집니다. 담당 교직원이 부모님/후견인에게 회의일정에 관해 전화를 하게 됩니다. 학부모/후견인은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가 담긴 결정을 서면으로 받게 됩니다. 결정 내용에 따라 학생은 학교로 복귀될 수도 있고, 10일 이상의 정학을 받을 수도 있으며, 제적 조치를 위하여 부교육감에게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장기 정학의 경우 해당 학생의 학부모/후견인은 Board of Education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재심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학 조치에 관한 서면 결정 통지 후 10일 이내에 Board of Education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Disciplinary Review and School Assignment Unit가 퇴학권고결정을 내렸을 경우, 교육감 대행인 Office of the Chief Operating Officer가 school personnel, 학생담당관, 학생과 학부모/후견인이 참석하는 회의를 주관하게 됩니다. 제적 심의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학부모/후견인은 서면 결정을 통보받은 지 10일 이내에 교육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결정에 대해 재심요청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이 제적 처분을 받게 되면 학생은 Montgomery County에 있는 어떠한 공립학교, 야간 학교, 또는 어떤 다른 MCPS 프로그램이나 활동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학생이 장래에 재입학 신청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제적 기간 동안 특정 활동에 참여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의 행동과 태도에서의 긍정적 변화를, 그리고 교육적 경험에의 참여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장과 다른 교직원으로 구성된 Expulsion Review Board (제적 심의 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학부모/후견인을 만나 입학 신청서를 검토하고 Montgomery County 학교 프로그램으로 복학 여부의 적합성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이 일 년에 총 10일 이상 정학 조치를 받았거나 제적되었을 경우, 그 학생은 Individualized Educational Program (IEP: 개별 교육 프로그램)에 근거한 교육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학 조치를 받은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는 추가적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섹션의 후반에 있는 규정들을 참조하십시오.

학교별 훈육방침

MCPS의 규정에 따르면 학생 대표는 부모와 교직원과 함께 각 학교 훈육 계획을 개발, 적용, 재검토, 강화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플랜에는 학생의 불만과 항소에 대한 처리 과정이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학교별 훈육방침은 과외 활동 또는 다른 학교와 관련한 활동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졸업식 참가 배제는 이 기준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은 상황에 따라 졸업식 참여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각 학교는 싸움, 무단 결강, 무단결석, 협박, 지각, 신원확인거부, 유사 무기류 소지, 방해행위, 외설행위, 낙서, 화재경보장난, 무단 학교 이탈, 흡연, 휴대용 통신기기의 오용, 그리고 불복종/무례와 같은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학교별 훈육방침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학업적 정직성은, 부당한 방법으로 좋은 점수를 얻으려고 시도하지 않는 것이며 효율적 학습환경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학교별 훈육방침은 효율적 학습환경을 조성/유지하기 위해 학업적 정직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학교는 문제 상황을 개선하고자 지속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때, 학생 지도자 선출/임명에서 해당 학생의 자격을 임시/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포함하여, 과외 활동 참여에 관한 제한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교직원, 학생, 그리고 학부모/후견인은 매년 학교별 훈육방침을 마련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교육구와 각 학교에 적용되는 훈육 정책 절차 지침

다음은 학생의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결정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교육구 전체의 위반에 대한 안내입니다.

학생은 강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훈육을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적절한 요소를 사려 깊게 훈육을 적용받을 권리가 있으며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연방정부와 주 법에 따라 결과는 특수교육 학생을 위해 적절히 수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사건의 경황과 사건의 당면문제에 따라 퇴학 권면, 경찰 인도 등의 결과에 대해 권한과 결정권이 있습니다. 특정 위반행위는 의무적으로 제적을 권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위반행위는 의무적으로 경찰에 인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Policy JFA: 학생의 권리와 의무

Policy JGA: 학생훈육

Regulation JFA-RA: 학생의 권리와 의무

Regulation JGA-RA: 학급 영과 학생행동중재

Regulation JEC-RA: 학생 퇴실

Regulation JGA RB: MCPS 학생의 정학/제적

Regulation COE-RA: 무기류

Regulation ECC-RA: MCPS 재산손실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13A.02.04:

Tobacco-free School Environment (담배가 없는 학교 환경)

Regulation COF-RA: Intoxicants on MCPS Property (MCPS 건물에서의 마약류)

Regulation IGO RA: Guidelines for Drug/Alcohol Abuse Counseling (마약/알코올 상담 안내서)

전체 카운티 규정 위반

I. 의무적 제적권고 의무적 경찰인계	규정/참고
마약류 배포 의도 또는 마약류 배포의 물증 위험 물질	MCPS Regulation COF-RA, Intoxicants on MCPS Property(MCPS 건물에서의 마약류)
폭탄 소지 및 복제, 폭탄 위협	MCPS Regulation EKC-RA, Bomb Threats/Explosive Devices(폭 탄위협/폭발물)
총기류 소지(출발신호 권총 포함)	MCPS Regulation COE-RA, Weapons(무기류)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한 난폭한 신체적 폭력 ¹	
신체적 손상/상해를 초래한 무기류	MCPS Regulation COE-RA, Weapons(무기류)
2부 자유재량 따라 학교에서 일어나는 결과 의무적 경찰인계	규정/참고
방화	MCPS Regulation ECC-RA, Loss of MCPS Property(MCPS 재산 손실)
폭력 조직 관련 사고	
마약류 소지 혹은 이용	MCPS Regulation COF-RA, Intoxicants on MCPS Property(MCPS 건물에서의 마약류)
성적 모욕 ²	MCPS Regulation ACF-RA, Sexual Harassment(성희롱)
절도, 한 건당 500불 이상일 경우	
증오/폭력 ³	참고 문헌 증오/폭력에 관한 안내서 참조(책자를 원하시면 Human Relations Compliance Office로 연락하십시오.)
3부 학교제량에 따른 결과 학교제량에 따른 경찰인계	규정/참고
시험 부정행위/표절 ⁴	
괴롭힘(왕따/불링) ⁵	MCPS Policy JHF, 약자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 행위
강도(범죄를 저지를 의도로 건물이나 타인의 소유지를 침입)	
컴퓨터 및 네트워크의 남용	MCPS Regulation IGT-RA, User Responsibilities for Computer Systems and Network Security(컴퓨터 시스템과 통신망 보안에 관 한 사용자의 의무)
공공기물 파손(기물파괴행위)	MCPS Regulation ECC-RA, Loss of MCPS Property(MCPS 재산 손실)
인정받을 수 있는 결석	
금품강탈 ⁶	
신입생 괴롭히기/신입생 신고식 ⁷	
칼 소지 ⁸	
다른 무기소지(모의총, BB 총, 공기총, 페인트볼총, 그리고 유사 총포 무 기류 포함)	MCPS Regulation COE-RA, Weapons(무기류)
다른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 폭력	
성희롱	MCPS Regulation ACF-RA, Sexual Harassment(성희롱)
성적 행위(동의에 의한)	MCPS Regulation ACF-RA, Sexual Harassment(성희롱)
절도	
협박(말, 전자 메일 ⁹ , 서면)	
폭언(욕설)	

¹ 학교 보건실 외에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자에게 가하는 신체적 폭력

² 2010년 안전한 학교 법(Schools Act of 2010)에 따른,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에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감이 내릴 수 있는 보고된 성적 모욕 및 공
격으로 체포된 학생이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에의 재학 거부 및 학교 버스 승차 거부 학생이 강간이나 성적 공격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학생은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재학하거나 같은 학교 버스를 타지 못 할 수 있습니다.

³ 인종, 피부색, 종교, 성적체성, 국적을 이유로 한 개인 협박 및 개인의 소유물을 파괴

⁴ 시험 부정행위의 예는 다음을 포함하되 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기, 협박, 기만, 절도, 속임수, 대화, 신호, 몸짓, 복사, 사진작가의 허락 없이 사진을 사용하는 것 등의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다른 학생보다 인정되지 않고, 불공정하고, 부정적하며 비양심적인 이익을 의도적으로 주고받는 것

⁵ 괴롭힘(왕따/불링)-1쪽에 있는 괴롭힘(왕따/불링) 정의 참조

⁶ 개인의 안위나 개인의 인격 및 개인의 소유물 등을 빼앗기 위해 강요나 명백한 위협, 또는 절도행위가 가해진 경우에 해당됩니다.

⁷ 신입생 괴롭히기는 단체에 가입하기 위하여 다른 학생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불안감, 당혹감, 희롱, 조롱을 감수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⁸ 의도적인 칼 소지는 경찰에게 인계됩니다.

⁹ 전자기기로의 협박은 인스턴트 메시지, 블로그, 소셜 사이트, 비디오, 사진을 포함한 모든 경우에 해당됩니다.

재심요청-이의제기-적법한 절차

본 섹션은 이의제기, 차별 대우에 대한 불만, 정학이나 제적 이외의 징계조치에 관련된 학생에게 공정한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칙은 MCPS 교육 목표 그리고 현존하는 법과 규정에 일치해야 합니다. 카운티 전체와 해당 학교의 징계 규정은 문서화하여 학부모/후견인, 학생, 그리고 교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 차원의 결정

A. 만약 학생이 차별에 대한 불만을 포함하여 어떤 문제나 이의제기가 있다면, 학생¹⁰은 다음의 권리가 있습니다.

1. 학교장이나¹¹ 대리인과 만나 비공식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2. 학교장이나 대리인이 이의제기 사항을 공식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A. 1.을 선택하였으나 비공식적인 처리 과정이나 제안된 해결 방안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 또는 문제가 제기된 후 학사 일정 15일 이내에 어떠한 해결 방안에도 이르지 못했을 경우, 해당 학생은 이의제기에 대한 학교장의 공식적인 검토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B. 학교장이 학생의 이의제기를 공식적으로 검토할 때, 학생이 자신의 이의제기를 뒷받침할 목격자나 증거를 제시할 권리. 학생으로부터 서면 이의제기를 접수한 지 학사 일정 10일 이내에 학교장은 서면으로 결정을 내려 이의제기자에게 답변을 보내야만 합니다.

학교장의 결정에 대한 재심 요청

A. 재심요청제출

만약 해당 학생이 내려진 판결에 만족할 수 없다면, 해당 학생은 학교장의 서면 결정 후 학사일정 10일 이내에 교육감이나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정에 대해 재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심요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이의제기 및 학교장의 결정에 대한 검토 요구
2. 모든 관련 사실 정보
3. 요구되는 개선안

B. 재심요청에 대한 검토

1. 교육감이나 대리인은 해당 문제와 관련 정보를 검토합니다.
2. 재심요청을 접수한 후 학사일정 10일 이내에, 교육감이나 대리인은 결정을 내려 해당 학생과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교육감의 결정에 대한 재심 요청

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 교육 위원회(Office of the Montgomery County Board of Education)에 연락하여 교육감의 결정에 대한 재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Policy JFA: 학생의 권리와 의무

Regulation JFA-RA: 학생의 권리와 의무

BLB: Rules of Procedures in Appeal and Hearings/재심요청과 청문회 절차에 관한 규정

Policy BLC: 특수교육 쟁점의 검토와 해결에 관한 절차

¹⁰ MCPS는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 혈통,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사회 경제적 지위, 성적 경향, 신체적 특징 또는 장애에 의한 차별을 금합니다. 인종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학생은 Dr. Frank H. Stetson, Chief School Performance Officer, Office of School Performance, 850 Hungerford Drive, Room 100, Rockville, MD 20850, 301-517-8258 또는 Student Affairs Office, 301-670-1419에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¹¹ 성희롱 신고를 조사하는 동안 신고자는 성희롱자와의 일대일 또는 어떠한 형태의 대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록—MCPS 규정

MCPS Regulation ABA-RA: Community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at the Local School(학교 정책 결정과 지역사회의 참여)

이 규정은 학교와 지역 사무소 혹은 중앙 사무실 교직원이 학부모와 함께 가정-학교의 강한 유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침을 담고 있으며 학생 개개인의 학습 동기, 학습의욕, 학업성취 그리고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권장합니다. 각 학교의 훈육계획에서 지역 사회 참여가 매우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합니다.

MCPS Regulation ABC-RA: Parent Involvement(학부모의 참여)

이 규정은 학교와 지역 사무소, 중앙 사무실 교직원이 학부모/후견인과 함께 가정 학교의 강한 유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침을 담고 있으며, 학생 개개인의 학습 동기, 학습의욕, 학업성취 그리고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을 권장합니다.

MCPS Regulation ACF-RA: Sexual Harassment(성희롱)

이 규정은 성희롱의 정의와 개인이 그런 사고를 신고하고 도움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이나 교직원이 그런 사고에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MCPS가 취할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MCPS Regulation CNA-RA: Advertising Materials and Announcements(광고물과 발표물)

이 규정은 광고물, 발표물, 제품, 서비스 판매에 관한 지침입니다.

MCPS Regulation COB-RA: Reporting a Serious Incident(중대한 사고의 신고)

이 규정은 학교 구역에서 또는 학교와 관련된 행사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행되어야 하는 절차에 관한 지침입니다.

MCPS Regulation COC-RA: Trespassing or Willful Disturbance on MCPS Property(MCPS의 구역 무단출입 혹은 고의적 소란 행위)

이 규정은 MCPS 시설 내를 무단출입하는 사람에 대응하는 학교 교직원의 권한과 법 시행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본 문서에 명시한 대로 정확 처분을 받은 학생은 학교장 혹은 대리인의 승인 없이는 학교 시설 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MCPS Regulation COE-RA: Weapons(무기류)

이 규정은 MCPS 구역 내에서 위험하거나 치명적이라고 판단되는 무기의 소지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따라야 할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기란 “...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를 말합니다. 이에겐 총포류, 칼, 그리고 무기로 사용되는 모든 물체”를 포함합니다.”

MCPS Regulation COF-RA: Intoxicants on MCPS Property(MCPS 건물에서의 마약류)

이 규정은 알코올을 음료 또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 승인되지 않은 규제 약물을 학교 구역 내에서 복용, 소지, 배포하는 것을 불법을 규정하는 주법을 명시하며 학교 관리자가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적용할 절차와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MCPS Regulation ECG-RA: Student Driving and Parking Facilities(학생 운전과 주차시설)

이 규정은 매년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시설과 학생의 주차 수요를 조사하는 것이 학교장의 의무이며 학생에게 주차 시설을 할당하는 기준을 마련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주차 위반에 대해 적절한 훈육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은 학교 구내에서 차량 운전과 주차문제에 관하여 모든 법과 교칙을 지켜야 합니다.

MCPS Regulation ECI-RA: Display of the United States and Maryland Flags(성조기와 메릴랜드주기의 게양)

이 규정은 성조기와 메릴랜드 주기의 게양에 대한 절차 그리고 개막 국민의례를 승인하고 학생이 국민의례에 참석하도록 장려할 의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참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MCPS Regulation EEA-RA: Transportation of Students(학생 통학)

이 규정은 학년별 보행 거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통학 버스 운행, 운행 기록, 안전수칙에 관하여 학교장이 따라야 하는 지침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훈육 문제를 보고할 때 버스 기사가 따라야 할 절차와 학생의 훈육을 마무리하는 것은 학교장의 의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수 교육 대상 학생과 장애 학생 통학 문제도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MCPS Regulation EKA-RA: Emergency and Disaster Preparedness(비상사태 및 재난대비)

이 규정은 MCPS 지역 내의 모든 사람의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지역 위기상황 대비책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MCPS Regulation EKC-RA: Bomb Threats/Explosive Devices(폭탄위협/폭발물)

이 규정은 MCPS 직원들에게 폭파 위협이 발생하거나 MCPS 구역 내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장치를 발견했을 때 취해야 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MCPS Regulation IGO-RA: Guidelines for Drug/Alcohol Abuse Counseling(마약/알코올 상담 안내서)

이 규정은 약물 남용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하며 MCPS 내에서의 문제에 대처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부모/후견인과 지역사회의 참여, 학생을 위한 교육 및 상담 기회의 마련, 그리고 카운티의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MCPS Regulation IGT-RA: User Responsibilities for Computer Systems and Network Security(컴퓨터 시스템과 통신망 보안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

이 규정은 아웃룩 계정 등과 같은 컴퓨터 통신망의 적절한 이용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용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MCPS Regulation IID-RA: Programs to be Cablecast on the MCPS Education Channels(MCPS 교육 방송에 관한 유선 방송 프로그램)

이 규정은 학교와 학교 관련 기관/부서 등이 MCPS 교육 방송 채널에서 녹화/실황 중계 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MCPS Regulation IKB-RA: Homework Procedures (과제물에 관한 절차)

이 규정은 학생에게 과제물과 과제물 처리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정된 종교적 휴일은 Board of Education이 채택한 달력에 표시된 날로 규정합니다. 종교적 행사 준수를 위해 결석한 학생은 과제를 보충할 기회를 얻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MCPS Regulation IKA-RA: Grading and Reporting (성적 평가 및 성적 보고)

이 규정은 MCPS의 기준에 근거한 교과과정과 MCPS와 Maryland주의 시험을 통해 주어지는 성적 평가와 성적 보고 과정을 병행함으로써 학생의 성취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성취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성적을 증진시킵니다.

MCPS Regulation IKC-RA: Grade Point Averages(학점 평균-GPA)와 Weighted Grade Point Averages(가중 평균 학점-WGPA)

이 규정은 학점 평균과 가중 평균 학점을 결정과 지원과정의 일부로서 이 정보를 요구하는 현 또는 미래의 고용주와 고등학교 이후의 교육 기관을 위한 절차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MCPS Regulation IOA-RA: Gifted and Talented Education(영재 교육)

이 규정은 영재 교육 방침 절차를 이행 절차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MCPS Regulation IQA-RA: Administration of the High School Interscholastic Athletic Programs(고등학교 학교 대항 스포츠 프로그램 관리)

Montgomery County고등학교 학교 대항 스포츠 프로그램 관리에 관한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모든 스포츠와 관련된 일정표, 규칙, 그리고 지침에 대해서는, 각 고등학교 운동 경기 편람(Senior High School Athletic Handbook)을 참고하십시오. 교장실과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MCPS Regulation IQB-RA: Extracurricular Activities (과외활동)

과외 활동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관리하는 기준을 명시한 규정입니다.

MCPS Regulation IQD-RA: Academic Eligibility for High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과외 활동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성적자격요건)

고등학교 학생의 참가 자격에 관한 규정입니다.

MCPS Regulation IQD-RB: Academic Eligibility for Middle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과외 활동에 참여하는 중학생의 성적 자격 요건)

중학교 학생의 참가 자격에 관한 규정입니다.

MCPS Regulation ISB-RA: High School Graduation Requirements(고등학교 졸업 요건)

이 규정은 주와 카운티 졸업요건의 이행 절차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MCPS Regulation JEA-RA: Student Attendance (학생의 출석)

이 규정은 출석에 적용되는 적합한 법 조항과 결석 인정과 결석 기록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후견인이 함께 출석 상황을 개선하고 사후 조치하는 절차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9-12학년에서 지나친 무단결석과 과목 학점과의 관계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규정은 교사와 학생에게 결석으로 인하여 못한 공부를 보충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MCPS Regulation JEC-RA: Student Withdrawals from Classes(학생 퇴실)

이 규정은 수업 참석을 금하는 퇴실 조치에 대하여 학생이 따라야 할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퇴실 조치의 기간과 성적과 학점 부과에 필요한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MCPS Regulation JFA-RA: 학생의 권리와 의무

학생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MCPS Regulation JGA-RA: Classroom Management and Student Behavior Interventions(학급 운영과 학생 행동 중재)

이 규정은 학습에 도움이 되는 학습 환경을 위하여 교실에서의 지속적인 학생 훈육과 통제에 관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본 문서와 Montgomery County Education Association과 Montgomery County의 Board of Education사이에 협약에 따른 학교장의 책임에 관하여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CPS Regulation JGA-RB: Suspension or Expulsion of an MCPS Student(MCPS 학생의 정학/제적)

이 규정은 정학과 제적에 관한 주법에 따른 것이며, MCPS 교직원의 의무를 규정하는 절차, 진행 절차상에서의 학생의 권리, 그리고 재심 요청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장애와 관련된 정학과 제적 조치에 대한 절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MCPS Regulation JGB-RA: Search and Seizure (수색과 압수)

이 규정은 법과 MCPS 규칙과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학생이나 이들의 소지품을 수색하고 압수할 때 항상 따라야 할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 따라야 하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MCPS Policy JHF: 약자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 행위

이 규정은 MCPS의 왕따, 희롱, 협박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학교를 학습을 위한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규정은 "약자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 행위"를 정의하며 예방과 중재, 행동의 결과와 교정 및 행위보고절차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MCPS Regulation JIA-RA: Honor Societies & Honor Rolls in Secondary Schools(중고등학교 우등생 클럽 및 우등생 명부)

이 규정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우등생 명부 제도, 그리고 고등학교에서의 우등생 클럽을 설립하는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MCPS Regulation JNA-RA: Curricular Expenses for Students(학생의 교과 과정 비용)

이 규정은 학생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해당 과목과 지도 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육자료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MCPS Regulation JOA-RA: Student Records(학생 기록)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 보존, 제공하는 절차와 그에 대한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MCPS Regulation KBA-RB: Educational Purposes and Administration of the MCPS WebMCPS(웹의 교육적 목적 및 관리)

이 규정은 MCPS 웹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기본 틀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MCPS의 교육적 목적만을 위한 웹사이트 사용을 지키며 MCPS 교직원 및 학생의 프라이버시 보호관리를 만들었습니다.

MCPS Regulation KEA-RA: Participation in Political Campaigns and Distribution of Political Materials(정치 운동의 참여와 정치적 유인물 배포)

정치 참여 허락을 받는 절차와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메모



Rockville, Maryland

Department of Student Services용으로 Department of Materials Management 제작
0540.12ct • 편집, Graphics & Publishing Services • 10/11 • 1,272

